

영등포구의회  
제21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 
운영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김길자 의원 발의】



2019. 9. 27.

運 營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140호로 2019년 9월 19일 김길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연구단체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(안 제2조)
- 나.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,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, 의원은 1인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- 다.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- 라.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, 연구주제 조정 및 연구계획의 승인

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마. 연구활동비 등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바.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 
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(안 제10조)

사.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 
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0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집행

다. 입법예고 (2019. 9. 10. ~ 9. 16.) :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「조례」로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총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2조부터 제3조에서는 5명이상의 의원으로 2개 단체 이내에

가입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,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활동비 지원 연구활동계획의 변경, 공동참여, 결과보고서 제출, 활동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연구단체 등록취소 및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함.

○ 검토결과,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“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, 영등포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들의 관심 있는 의정 및 구정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위한 ‘연구단체’를 지원하여,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하면서도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,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**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**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 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